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109
----------	------------

제출연월일	2015. 11. 2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도모함에 있어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거창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유지('15.12.31까지 존속기한 규정 삭제)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한 조항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존속기한 삭제함(안 제5조)

○ 삭제 : 위원회의 존속기한 2015년 12월 31일

나. 위원회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함(안 제6조)

○ (현행) 건설교통과장 ⇒ (개정) 안전총괄과장

○ 신설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나. 예산조치 : 2016년 예산 35만원(위원참석수당)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10. 28. ~ 11. 1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4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8항”로 한다.

제4조 각 호외의 본문 중 “조언하게 하기”를 “응하기”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3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을 “법 제16조제2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18조제7항 중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u>」 제16조제4항에 따라 거창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설치 및 기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u>조언하게 하기</u> 위하여 거창군 <u>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5. (생략)</p> <p>제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u>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p> <p>제6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 생활지원실장, <u>건설교통과장</u>, 도시건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u>이 경우 제1호의 위촉위원은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2명 이상으로 한다.</u> 1. ~ 3. (생략)</p> <p>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u>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u>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p> <p>제18조(운영위탁) ① ~ ⑥ (생략)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동지원 센터의 운영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u>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u>」를 준용한다.</p>	<p>제1조(목적) ----- 「<u>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u>」 제16조제8항-----</p> <p>제4조(설치 및 기능) ----- -----<u>옹하기</u>----- -----</p> <p>1. ~ 5.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6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안전총괄과장</u>----- ----- -----<u>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u>----- 1. ~ 3. (현행과 같음)</p> <p>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 <u>법 제16조제2항 및 제8항</u>----- ----- ----- 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8조(운영위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u>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u>」 -----</p>